

제증명서발급 규정

| 문서번호 | BSKS-1-1-34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2012.02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| 1/3 |

2012.02.01.제정 2014.02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4.2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.)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증명서 종류 및 담당부서) 본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09.25.>

| 담당부서 | 종류 | 발급대상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| 재학증명서 |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|
| | 졸업예정증명서 |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2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졸업소요 학점인 8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|
| | 휴학증명서 | 본교에 현재 휴학하고 있는 자 |
| | 졸업증명서 | 본교를 졸업한 자 |
| | 재적증명서 |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현재 제적된 자 |
| 교무처 | 학적부 |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|
| 业十月 | 성적증명서 | 본교 재적생, 제적생 중 성적을 취득한 자 |
| | 교육비납입증명서 | 본교에 등록한 이력이 있는 자 |
| | 경력증명서(시간강사) | 본교 시간강의 사실이 있는 자 |
| | 특별과정수료증명서 | 본교 특별과정(1년)부 이수자 |
| | 특별과정성적증명서 | 본교 특별과정(1년)부 이수자로서 성적을 취득한 자 |
| | 시간제성적증명서 | 본교 시간제강의를 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한 자 |
| | 학생증 | <삭제> <2019.07.16.> |
| 학생 산학취업처 | 취업추천서 | 본교 학생(졸업자 포함)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 |
| 입학홍보처 | 신입학증명서 | 본교에 입학을 지원해 합격하고 등록한 자 |
| 2] □ ∋] | 재직증명서 | 본교에 현재 재직 중인 자 |
| 사무처 | 경력증명서 | 본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|



제증명서발급 규정

| 문서번호 | BSKS-1-1-34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2012.02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| 2/3 |

제3조(발급명의) 제 증명서의 발급 명의는 총장으로 한다.

- 제4조(발급방법) ① 교무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우편, FAX 민원, 인터넷, 자동증명서 발급기로 신청·발급한다.<개정 2020.09.25.>
 - ② 학생산학취업처, 사무처, 입학홍보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직접 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.<개정 2020.09.25.>
- **제5조(발급절차)**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 등에 기재된 사실을 기록, 대조하고 해당란에 각각 날인하여 발급한다.
- 제6조(발급시한) 증명서 발급 시한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나 영문증명서는 예외로 한다.
- **제7조(발급대장)**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, 유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) ① 제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07.16.>

| | 재학증명서 | 휴학증명서 | 재적증명서 | | 졸업예정증명 | 3서 | <삭제>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|
| | 200원 | 200원 | 300 |)원 | 300원 | | | |
| | 졸업증명서 | 학적부 | | .과정 증명서 | 특별과정 성적증명/ | | 성적증명서 | |
| ユロ | 300원 | 400원 | 300 |)원 | 400원 | | 400원 | |
| 국문 | 경력증명서(시간강사,교직원), | | | | |), | | |
| | 제적증명서 | | 교육비납입증명서, 시간제성적증명서, | | | | | |
| | | | 취업추천서, 재직증명서(교직원), | | | | | |
| | | | 신입학증명서 | | | | | |
| | 300원<신설 2019.06.12.> | | | 무료 | | | | |
| |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| | 명서 | 재적증명서 | | 졸 | 졸업예정증명서 | |
| | 400원 | 400 원 |] | 600원 | | | 600원 | |
| | 졸업증명서 | 성적증다 | 명서 | 특별과정수료증명서 | | 특별과정성적증명서 | | |
| 영문 | 600원 | 800원 | 800원 | | 600원 | | 800원 | |
| | 제적증명서 | | 경력증명서(시간강사, 교직원), | | | | | |
| | | | 시간제성적증명서, 재직증명서(교직원) | | | | | |
| | 600원 | | 무료 | | | | | |

- ②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민원우편 또는 제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할 때 징수한다.
- **제9조(증명발급시 신분확인)** 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7.16.>
 - ② 대리인은 가족에 한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



제증명서발급 규정

| 문서번호 | BSKS-1-1-34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2012.02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| 3/3 |

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7.16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 『산학처』를 『산학취업 처』로『입시홍보실』을『입학홍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